

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. 6. 17 선고 2016가합151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학교법인 경구학원

피 고 주식회사 시은주택

변론 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16. 6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가.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의 소유자로서 2007. 10. 26.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월 500만 원, 임대기간 2007. 11. 1.부터 2010. 10. 31.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, 피고는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을 신축하였으며, 원고는 2010. 10. 31. 위 임대기간을 2012. 10. 31.로 연장하였다.

나.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, 피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,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무변론 판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

재판장 판사 김연우, 판사 이현석, 판사 김유미

별지

목록

1. 구미시 봉곡동 362-10 대 792.3㎡
2. 구미시 봉곡동 362-10 지상 일반철골구조 그라스올판넬지붕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
반음식점 399.55㎡. 끝.